

CONTENTS

1. 대법원 특별소송실무연구회 p.2

중간적 행정결정 유형별 항고소송 대상적격 검토 및 온라인 플랫폼의 행정책임 인정 법리

2. 대법원 노동법실무연구회 p.4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 “판례 인정 법리의 발전적 전개에도 불구하고 명문 규정 없어 근본적 한계”

3. 대한변호사협회 p.7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 선언했는데...“양경숙 의원 세무사법 개정안, 국민의 선택권 정면으로 침해하는 당연무효 법률안”

4. 한국국제사법학회 p.8

국제상속과 국제신탁의 준거법 결정, 전정과 이중반정 허용 등에 대한 입법론

5. 대법원 판례 p.10

남편의 폭력을 유발한 책임이 있다는 이유로 아내의 이혼청구를 배척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경범죄처벌법상 통고처분이 이루어진 범행에 대해 공소가 제기된 사건

6. 헌법재판소 판례 p.11

초·중등법상 교원의 아동학대범죄 가중처벌 사건, 6·25 전몰군경자녀수당 수급권자 사건

7. 해외법뉴스 p.12

“동성애자 트랜스젠더라는 이유로 해고한 것은 민권법 위반” 선언한 미연방대법원 판례

8. 입법뉴스 p.14

행정기본법 제정 이유 및 전문

기사 1

대법원 특별소송실무연구회

중간적 행정결정 유형별 항고소송 대상적격 검토 및 온라인 플랫폼의 행정책임 인정 법리



대법원 특별소송실무연구회(회장 안철상 대법관)가 지난 3월 8일, 제245차 연구회를 열고 '중간적 행정결정의 처분성' 및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약관규제법 적용 여부'를 논했다. 이날 발표는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이승민 교수와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홍대식 교수가 맡았다.

■ “행정의 다단계 의사결정, 항고소송 대상적격 관련하여 세밀한 검토 필요하다”

이승민 교수는 “현대 행정국가에서 행정의 기능과 역할이 지속적으로 확장됨에 따라 행정의 다단계 의사결정 방식 또한 다양하게 확대되고 있다”면서, “시민의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권리구제수단인 항고소송의 제기과 관련하여 혼란을 겪을 수 있다”고 문제의식을 제기했다. “여러 단계의 의사결정 중 어떤 것을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삼아야 하는지, 만약 최종 결정이 아닌 그에 앞선 단계인 ‘중간적 결정’에 대해 항고소송의 대상적격(처분성)을 인정한다면 그 기준은 무엇

인지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는 것이다.

항고소송의 대상적격을 논하기 위한 ‘중간적 행정결정’은, “종국적인 행정처분의 선행적 절차로 이루어지는 행정청의 의사결정으로서, 절차적·내용적으로 완전히 독립되거나 완결되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 종래 쟁송법적 측면에서 논의되던 ‘중간처분’과 상당한 연관이 있어 중간처분의 개념에서 시작할 필요가 있다는 게 이 교수의 말이다.

최종적인 행정처분의 선행적 절차에 해당하는 중간처분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어서 ‘처분’이라는 용어에도 불구하고 원칙적으로 그 처분성이 부정된다. 다만 종래 이론은 “그 외형상 중간처분으로 보일지라도 직접적으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발생시키는 경우에는 그 처분성을 인정한다”는 예외를 두면서, 그 판단을 전적으로 개별·구체적인 사안에 맡기고 있다. 이 교수는 “전체적으로 볼 때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범위는 실제법적 행정행위의 개념이 확장되거나 쟁송법적 처분이

인정되는 형태로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선행하는 행정결정이 그 자체로 절차적·내용적 독립성과 완결성을 지니는 경우에는 이를 기초로 한 후행결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선불리 중간처분이나 중간적 행정결정으로 취급할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으면서, “공시지가 결정과 같이 이를 바탕으로 다른 처분이 내려진 경우, 제소기간 및 불가쟁력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는 하자의 승계 문제로 귀결시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마찬가지로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에 따라 이루어지는 공무원에 대한 직위해제가 향후 직권면직의 전제가 될 수 있다 하더라도, 이는 중간적 행정결정이 아닌 독립적인 행정결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 외부성 존재하는 ‘광의의 중간처분’에 논의 실익 있어

이 교수에 따르면 중간적 행정결정은 어떤 형태로든 대외적으로 표시된 경우, 즉 외부성이 있을 때 그 처분성을 논할 실익이 있게 된다. 따라서 ‘세무서장이 내부적으로 행하는 과세표준결정, 병무청장의 최종 결정에 앞서 이루어지는 관할 지방병무청장의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공개 대상자 결정’과 같이 대외적으로 표시되지 않고 이루어지는 순수한 행정기관의 내부 절차는 그 처분성이 부정된다. 또한 ‘병역 처분을 위한 군의관의 신체등위판정’처럼, 대외적 표시 여부를 불문하고 그 내용과 성격상 행정결정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도 처분성이 부정된다.

처분성이 당연히 부정되는 위의 ‘협의의 중간처분’ 유형과는 달리, ‘광의의 중간처분’은 행정결정의 내용과 형식을 갖추어 어떤 형태로든 일정한 외부성이 존재하는 경우로서 세부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게 이 교수의 설명이다. 광의의 중간처분과 구별되어야 할 개념에는 ‘중간단계 결정(확약, 사전심사, 가행정행위, 사전결정 또는 부분허가 등)’이 있다. 중간단계 결정은 처음부터 일정한 독립성을 지닌 복수의 행정결정이 예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광의의 중간처분과 차이가 있다.

이 교수는 광의의 중간처분을 크게 2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첫째는, 하나의 처분을 위한 절차에서 구조적으로 최종처분에 선행하는 중간적 행정결정이 존재하는 경우다. 이에 ‘과세관청의 세무조사(개시)결정,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의 재산조사개시결정, 감사원의 징계의결요구,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산재보험료 부과처분에 선행하는 근로복지공단의 사업종류 변경결정’ 등이 해당한다. 둘째는, 어떤 행정처분의 직접적·부수적 효과 또는 그러한 효과의 누

적이 새로운 행정처분의 요건 내지 전제가 되는 경우에 그러한 새로운 행정처분을 개시하게 하는 내용의 행정결정이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항에 따른 공정위의 입찰참가자격제한·영업정지 요청(의결)이 이에 해당한다.

■ 온라인 숙박예약 플랫폼의 환불불가조항...공정위와 법원의 서로 다른 판단

공정위는 지난해 2월 11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숙박예약 거래 중개서비스 사업자인 부킹닷컴 비브이(이하 ‘부킹닷컴’)에 약관규제법 제17조 제2항 제6호에 근거한 시정명령을 했다(의결 제2019-032호). 공정위가 불공정약관조항이라고 판단한 약관조항은 고객이 숙박예약을 취소하는 경우 예약 취소 시점 및 숙박예정일로부터 남은 기간과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숙박대금 전액을 환불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환불불가조항’이다.

홍대식 교수에 따르면, 공정위는 부킹닷컴이 숙박업체와 공동으로 숙박예약의 당사자로서 환불을 포함한 숙박예약 관련 약관을 고객들에게 제안한 자라고 판단했고, 환불불가조항이 약관규제법 제8조에 규정한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에 해당하여 무효이므로, 이러한 약관조항을 계속 사용하고 있는 부킹닷컴은 약관규제법 제17조의 의무를 위반한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부킹닷컴이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서울고등법원(2020. 5. 20. 2019누38108호)은 공정위와 달리 판단했다. 부킹닷컴이 환불불가조항에 관한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부가적으로 환불불가조항이 약관규제법 제8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것이다.

홍 교수는 “만일 약관규제법의 해석·적용에 있어 행정법상 행정적 책임 주체를 정하는 법리가 민사법상 계약 당사자 확정 법리와 동일해야 한다면, 대상판결과 같이 숙박예약의 당사자가 될 수 없는 사업자를 행정법상 행정적 책임 주체로 보기가 어렵게 된다”면서, “공정위에 의한 행정적 통제가 구체적인 계약관계를 전제로 하지 않고 불공정한 약관조항을 규제하는 수단이라는 점에서, 불공정한 약관조항이 포함되는 개별적인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사업자에 국한하지 않고 불공정한 약관조항의 사용에 책임이 있는 사업자에게 까지 행정적 책임을 부과할 수 있는 새로운 법리의 정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약관규제법의 해석·적용에 있어 행정법상 행정적 책임 주체를 정하는 법리는 민사법상 계약 당사자 확정의 법리와 동일하지 않아도 된다”는 전제를 취하면서, 약관규제법의 해석·적용에 있어 행정법상 행정적 책임 주체를 정하는 법리를 어떻게 정립할 수 있을지, 그리고 그 법리에 따를 때 대상판결의 사안에서 부킹닷컴을 행정법상 행정적 책임 주체로 볼 수 있을지를 검토했다.

■ “단면적 계약관계 전제한 약관규제법 조항, 오늘날 거래 현실 반영에 한계 있어”

홍 교수가 행정적 책임의 주체를 반드시 민사법상 당사자 확정의 법리에 따라야 할 필요는 없다는 근거로서 제시한 사례는 두 가지다. 하나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행정적 책임의 주체를 판단하기 위한 대법원의 판례인데, 대법원은 다음커뮤니케이션 사건에서 “광고행위를 한 광고주 뿐만 아니라 일정한 판단 기준에 따라 광고행위에 기여한 사업자도 광고행위의 주체가 된다”고 보아 행정적 책임의 주체를 넓은 바가 있다.

대법원은 또한 이베이코리아 사건에서 「출판문화산업진흥법」상 ‘간행물 판매자’에, “간행물의 유통에 관련된 사업자로서, 관련 법령에 따라 통신판매업자로 간주되며 판매자와 별도로 간행물의 최종 판매가격을 결정할 수 있고 그에 따른 경제적인 이익을 얻는 ‘통신판매중개업자’가 포함된다”고 판시하기도 했다.

홍 교수는 “두 당사자 간 단면적(one-sided) 계약관계를 전제로 하여 제정된 약관규제법(제2조 제2호)은 사업자를 ‘계

약의 한쪽 당사자로서 상대 당사자에게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할 것을 제안하는 자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면서, “이는 실제 거래 현실에서 자주 등장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관계, 삼면계약관계는 물론, 발전과 기술의 진화에 따라 더욱 복잡하고 다양하게 변모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둘러싼 양면적(two-sided), 다면적(multi-sided) 계약관계와 그에 따른 거래 현실을 잘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불공정약관조항의 사용을 금지하는 약관규제법 규정이 ‘건전한 거래질서’의 확립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사업자 요건을 구성하는 계약을 구체적·개별적인 계약에 한정하지 말고 그보다 넓게 파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구체적으로 온라인 플랫폼 제공자가 행정적 책임을 지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온라인 플랫폼 제공자와 입점업체 사이 및 온라인 플랫폼 제공자와 고객 사이의 거래약정의 내용 △온라인 플랫폼 제공자의 입점업체와 고객 각각에 대한 온라인 플랫폼 이용약관의 내용 △온라인 플랫폼 제공자와 입점업체 사이 및 온라인 플랫폼 제공자와 고객 사이의 거래 가격 기타 거래조건이 입점업체와 고객 사이의 거래 가격 기타 거래조건에 미치는 영향 △문제되는 약관조항의 작성과 거래 사용 과정에 관하여 온라인 플랫폼 제공자와 입점업체가 수행한 역할과 관여 정도 △문제되는 약관조항의 구체적 내용은 물론 문제되는 약관조항의 제공 주체에 대한 소비자의 오인가능성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나아가 “온라인 플랫폼 제공자가 통신판매업자와 별도로 문제되는 약관조항의 내용을 결정하거나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얻는 경우에는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사 2

대 법 원 노 동 법 실 무 연 구 회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 “판례 인정 법리의 발전적 전개에도 불구하고 명문 규정 없어 근본적 한계”

대법원 노동법실무연구회(회장 김선수 대법관)가 지난 4월 6일, “갱신기대권에 대한 기대의 갱신”을 주제로 연구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표는 인제대 법학과 박은정 교수, 토론자로는 성균관대 법전문 김홍영 교수, 부산지방법원 김윤영 부장판사가 참여했다.

■ 기간제 근로자들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의 의미...“판례에 첫 등장은 1980년대”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화 정책’은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자 최대 국정과제였다. 이에 따라 많은 기간제 근로자들이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됐지만, 박은정 교수는 “이 과정에서 무조건적인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이 아닌, 신규채용이라는 방식이 이용된 경우가 다수 있었다”면서 “공공부문 기업들은 경영상 필요나 예산상 제약을 이유로 정규직 전환대상인 근로자 인원보다 적은 숫자의 정규직(무기계약직) 일자리를 신규채용 일자리로 내놓고, 공정경쟁이라는 이름으로 전환대상 기간제 근로자들만이 아닌, 일반 구직자들도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고 했다. 국가 정책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들에게 정규직(무기계약직) 일자리에 대한 기대권이 발생했다고 볼 수도 있는데, 경영상 필요나 예산상 제약이 합리적인 이유가 되어 이 기대권을 부정하는 결과가 되거나, 또는 공정경쟁 내지 공정채용이라는 이유로 기대권이 없는 구직자들과 정규직(무기계약직)이 일자리 경쟁을 펼쳐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는 설명이다.

여기서 기간제 근로자들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한 의문이 다시금 대두되었다는 게 박 교수의 말이다. 그에 따르면 기간제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판례상 확인된 것은 지금으로부터 약 27년 전이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 제정되기 이전까지 갱신기대권은 주로 장기간에 걸쳐 갱신이 반복되어,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게 된 경우의 문제였으나, 기간제법 제정 이후 갱신기대권은 기간의 만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정할 수 있는 요건에 대한 해석의 문제와 함께 무기계약직 전환기대권 발생이 인정되는지 여부 등 다양한 문제로 확장됐다. 또한 갱신기대권을 제한할 수 있는 요건 등에 관한 사례들도 많이 양산했다.

판례의 태도를 살펴보면, 노동판례상 기대권이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한 것은 1980년대 후반이다. 계약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대학교원의 재임용계약 사안에서, “교원은 재임용 ‘기대권’을 가진다”는 주장이 근로자측으로부터 제출됐으나 대법

원은 근로자의 근로계약 기간 갱신에 대한 기대권을 실질적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후 대법원 1994. 1. 11 선고 93다17843 판결은 “연단위계약의 갱신이 관례화됨으로써 별다른 하자가 없는 이상 계속 근무할 수 있다는 기대관계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존속되어 왔고...원고들과의 계약기간 만료 후 계약갱신을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에 대한 입증에 없는 한, 피고가 원고들과의 시간강사 임용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정당한 사유없는 해고와 다름이 없어 무효”라고 선고하며 기대권을 인정하기 시작했다.

■ 점차 구체화된 판례의 기대권 인정 논리

2007년 제정된 기간제법은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사용자는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고 정한다(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본문). 박 교수는 이 기간제법 제정 전후로 판례의 태도를 나누어볼 수 있다고 했다.

기간제법 제정 논의가 한창이던 2006년, 대법원은 선형 판례들이 제시한 “계속 근무할 수 있는 기대관계”가 성립할 수 있는 경우를 “①계약서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②기간을 정한 목적 ③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④동종의 근로계약 체결방식에 관한 관행 ⑤근로자보호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로 보았다. 이후 2007년 판결(2005두16901)에서는 위 ③의 표현을 “채용 당시 계속근로 의사 등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라고 구체화하고, “⑥근무기간의 장단 및 갱신 횟수” 요건을 추가했다.

기간제법이 제정된 후 2011년 대법원(2007두1729)은 “①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의 존재 여부 ②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③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④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들이 종합적으로 판단되어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될 때, 근로자에게는 근로계약의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설시했다. 박 교수는 “이 판결이 현재 갱신기대권의 발생을 판단하는 가장 기본적인 기준”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기간제법 시행 이후에도 기존 판례의 갱신기대권 논리

가 유효하게 적용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하여는 학설상 다툼이 있었다. 이 논란을 정리한 것이 2014년 대법원 판결(2011두12528)인데, 대법원은 “기간제법의 시행으로 사용자가 2년의 기간 내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기간제 근로자의 총 사용기간이 2년을 초과할 경우 기간제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되더라도, 위 규정들의 입법 취지가 기본적으로 기간제 근로계약의 남용을 방지함으로써 근로자의 지위를 보장하려는 데에 있는 점을 고려하면, 기간제법의 시행만으로 시행 전에 이미 형성된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배제 또는 제한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하며 기존 판례의 갱신기대권 논리가 그대로 유효함을 선언했다.

■ 갱신기대권이 존재함에도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가의 문제

박 교수는 “갱신기대권의 인정과 전개의 과정은 기간제 근로계약의 만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에게 계약 갱신을 요구할 권리가 인정됨을 확인하는 의미였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러한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계약의 갱신이 거절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측면도 있다”고 했다.

갱신기대권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경우들로는 업무평가 결과에 따라 계약갱신을 거절하는 경우 △계약갱신거절의 사유가 사업의 축소·폐지인 경우 △공개채용 방식을 취하는 경우 △정년이 도래하거나 경과한 경우 등이다.

박 교수는 “평가의 객관적 합리성이나 공정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가 결과에 따라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 기간제 근로자와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볼 수 있지만, 이때 평가의 객관적 합리성이나 공정성을 어떻게 확인 내지 확신할 수 있는가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고 하는 한편 “대법원이 경영상 필요에 따라 갱신기대권을 제한하려는 시도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경영상 해고 규정에 준하는 요건을 필요로 한다고 본 것은, 기업이 구조조정이나 경영합리화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기간제 근로자들의 갱신기대권 실현을 회피하려는 시도를 막기 위한 하나의 지침을 제공한 것으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고 평했다.

또한 “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했거나 정년을 지난 상태였다고 해도 근로자가 담당하는 직무수행 능력에 문제가 있다거나

연령에 따른 작업능률 저하 또는 위험성이 증대되었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면, 정년이 갱신기대권을 제한하거나 부정하는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점도 짚었다.

■ “명문 규정 없는 갱신기대권 법리는 근본적으로 한계 있어”

김홍영 교수는 “판례가 발전적으로 형성해 온 갱신기대권 법리는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관계 존속을 보장하려는 사법부의 노력의 산물이라는 점에서 그 공로가 크지만, 갱신기대권은 근본적으로 근로기준법상 명문 규정이 없고 근로기준법 제 23조 제1항에 기대어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의 하나로써 해석상 인정될 뿐이어서, 구체적인 상황에서는 여러 한계를 노출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갱신기대권을 근로기준법에 명백히 규정하여 강행규정화한다면 그 해석도 종전과는 매우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한편, “실제 분쟁에서 가장 문제되는 지점은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가”라며,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5두44493 판결을 주로 검토했다.

김 교수는 대상판례에 대해 “갱신기대권을 가진 근로자에게 공개채용절차로 하겠다고 채용절차를 바꾸고, 그 채용절차를 진행한 결과 더 나은 근로자를 신규채용하였다면, 그 배제된 근로자는 갱신기대권을 갖는데도 불구하고 공개채용이라는 경쟁에서 다른 신규채용자보다 못하다는 점이 갱신을 거절당하는 데에 정당한 이유가 되는 것인지 의문을 남긴다”고 했다. “대상판결은 경영해고 판단법리와 마찬가지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다면 가능하다는 전제에서 출발하는데, 즉 공개채용방식의 신규채용으로 채용방식의 전환이 그렇게 할 만한 경영상 내지 운영상 필요성이 있다면 가능하다는 전제를 가지고 있는 듯하여 문제”라는 것이다.

김 교수는 또한 “대상판결을 잘못 반대해석하면 ‘사전 동의 절차를 거치거나 가점 부여 등의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였다면 갱신기대권을 집단적으로 배제할 수 있는 공개채용절차가 허용된다’고 쉽게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도 했다. 그는 “대상판결과 같은 사안에서 대법원은 오히려 △개별적 갱신기대권 배제는 정당한 이유 없다면 금지 △갱신기대권의 경영상 배제를 예외적으로만 허용하는 법리 수립 △가점 부여는 갱신 거절의 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는지를 고려하는 요소로 참조 △신규 경쟁 채용방식으로의 전환에 관하여 근거 규정을 두었다는 점만으로는 갱신기대권이 부정되지 않는다는 원칙을 강조할 필요가 있었다”는 의견을 냈다.

기사 3

대한변호사협회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 선언했는데... “양경숙 의원 세무사법 개정안, 국민의 선택권 정면으로 침해하는 당연무효 법률안”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가 지난 4월 12일, 세무사법 개정안 위헌성 검토 토론회를 개최했다. 양경숙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하여 계류 중인 세무사법 개정안의 위헌성과 문제점을 분석하여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라는 것이 협회 측의



설명이다. 이종엽 대한변협회장은 “양경숙 국회의원의 세무사법 개정안은 지난 20대 국회 때 위헌성이 거듭 문제되어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계류되었다가 국회 임기만으로 폐기된 ‘김정우 의원안’을 그대로 본뜬 것”이라면서 “당시 대법원과 법무부도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에 대한 일부 업무배제 규정은 위헌의 소지가 많다는 공식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며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나아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법무부·법원행정처·헌법학회 등 법조계 모두가 그 위헌성을 문제 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법안을 통과시킨다면, 이를 시정하기 위해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소모될 뿐 아니라 필연적으로 국민에게 그 해악을 끼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 “위헌성 확인된 법률과 동일 내용 규정한 개정안, 통과되어도 당연무효로 의제될 뿐”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성중탁 교수는 논란이 된 세무사법의 개정 연혁을 먼저 소개했다. 그에 따르면 1961년 9월부터 2003년 12월까지 42년간 동법은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면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고, 세무사 등록 및 세무대리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이후 2003년 12월 31일 법이 개정되면서 세무사시험 합격자만 세무사 등록이 가능하도록 했는데, 2004년 1월 1일 이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자는 세무사

자격은 취득하지만 세무사 등록 및 세무대리 업무 수행은 할 수 없게 됐다. 이어 2017년 12월 26일에는 변호사 자격 있는 자에게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는 조항까지 삭제됐다. 2018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변호사 자격 취득자에게 세무사 자격도 부여되지 않게 된 것이다.

해당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이 제기되자 2018년 4월 26일, 헌법재판소는 위헌성을 확인하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으나, 국회 개정 시한인 2019년 12월 31일까지 개정이 이뤄지지 않았다. 당시 정부(기재위)는 “세무사 자격이 있는 변호사는 실무교육을 이수한 후 변호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하여 모든 세무대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정부안을 발의했다.

성 교수는 “세무사법과 같이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른 입법개선 기한 내 개선입법이 없이 그 시한이 도과한 경우 단순위헌결정과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고, 당해 시한이 도과하면 대상법률은 시한의 마지막날이 종료함과 동시에 법률로서 효력을 상실한다”고 설명하면서 “만약 (양경숙 의원안처럼) 현재가 위헌으로 지적한 내용과 동일한 취지의 내용을 담은 개정

안을 통과시킨다면, 그 입법 역시 당연무효가 되어 실무에서 법률의 구속력이 부정될 가능성이 높으며, 개정안이 통과되어도 별도의 현재 위헌심사 없이 법원 등에서 당연무효로 의제될 여지가 농후하다"고 했다.

나아가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결정문에서 명시한 개정시한의 도과로 현재 변호사들은 아무런 제한 없이 세무대리가 가능한 것"이라면서 "지금 변호사들이 세무사의 자격을 가지고 이미 세무대리에 종사하고 있는데, 1년 여가 지나 갑자기 변호사의 세무대리 업무 중 80%에 달하는 기장과 신고업무를 전면금지하는 법안이 제정된다면, 이는 소급입법에 의한 기본권 박탈에도 해당되어 또한 위헌인 것"이라고 말했다.

■ "국민은 자신에게 필요한 업무성격에 따라 적합한 전문가 선택할 권리 있어"

성 교수는 "세무 업무의 절대 다수가 법률사무에 해당하여 변호사의 본래 직무에 당연히 포섭되는 것"이라면서 "세무사법에 따라 세무사 직역이 존재하게 되기 때문에 변호사도 세무업무를 수행할 권한이 있다는 점을 세무사법에 명시하여 확인시켜 준 것이지, 변호사가 세무사법에 의하여 비로소 세무 업무를 수행할 권한을 부여받게 되는 것은 전혀 아니"라고 강조했다.

더욱이 "장부 작성의 대행' 업무가 세무사 업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위상을 생각할 때, 위 개정안은 세무사 자격

을 가진 자가 핵심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박탈당하는 셈"이라며 그 위헌성의 정도를 크게 봤다. 그에 따르면 기장업무는 세무조정과 성실신고 확인의무, 과세처분과 관련된 전후의 이의제기 및 심판과 소송 등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조세행정 및 권리구제의 모든 과정에서 출발점이 되는 업무다.

한편 국민의 선택권(자기결정권)이 박탈당하는 점도 중요하게 짚었다. 그는 "국민은 납세의무의 실현을 조력하는 전문자격사들 중에서 자신의 판단에 따라 적합한 자격사를 선택할 권리를 가진다"면서 "소비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기장업무와 세무조정이 중요하다고 판단하면 이에 더 적합한 자격사를 선택할 것이고, 이 과정을 포괄하여 조세채무의 성립요건 등 조세법령의 해석 및 위헌성 검토를 포함한 조세분쟁 처리까지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이를 포괄하여 처리할 수 있는 세무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를 자신의 세무대리인으로 선택할 것"이라고 전제했다.

따라서 "이러한 국민의 선택 과정에 국가가 구체적으로 관여하고 간섭하여서는 안되며, 여기서 더 나아가 국가가 적극 개입하여 변호사를 세무대리 영역에서 배제하게 된다면 이는 국민의 선택의 자유를 적극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는 "소비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변호사와 세무사에게 동등하게 세무대리 업무를 모두 허용하여 국민이 주어진 상황에 따라 변호사, 세무사, 공익회계사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입법자가 마땅히 취해야 할 국민의 이익에 부합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기사 4

한국국제사법학회

국제상속과 국제신탁의 준거법 결정, 전정과 이중반정 허용 등에 대한 입법론

한국국제사법학회(회장 석광현 교수)가 지난 3월 25일, 제 148회 정기연구회를 열고 "국제상속법과 국제신탁법: 판례의 현주소와 입법론"을 논했다. 이날 발표는 장준혁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토론은 현소혜 성균관대 법전문 교수 가 맡았다.

■ 과도하게 선택의 자유 주어진 상속준거법 결정, 해법은?

장준혁 교수는 상속준거법을 결정하는 데 있어 당사자자치에 근거한 선택의 자유가 과도하게 주어진 점을 짚었다. 그는 "구글, 트위터, 페이스북, 아마존과 같은 빅테크(Big Tech) 글로벌 기업이 서류상 회사(paper company)를 설립하여 모든 매출을 그 회사의 소득으로 잡아 타국의 법인세 부과시도를 피할 수 있는 행동반경과 비교해 보아도, 상속준거법 선택의 자유는 그보다 더 클 것"이라고 비유했다. 더욱이 준거

법선택의 방식요건과 비국가법 선택이 불가하다는 점 외에는 피상속인에게 그 어떤 제약도, 비용 부담도 없다는 설명이다. 장 교수는 “한국의 입법자는 부동산에 관해서는 그 소재지법을 선택할 자유를 무제한으로 인정하고, 상거소지법을 엄격한 제한 하에 선택할 수 있게 하고 있는데, 아예 한국 국제사법상으로 외국에서 준거법이 될 만한 법들을 피상속인이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하나의 해법”이라는 견해를 냈다. 이렇게 하면 한국의 법원, 기타 관청도 그렇게 선택된 법을 상속준거법으로 적용하게 되어 이 자체만으로 국제적 판단일치가 도모된다는 설명이다. 즉 “당사자자치가 국제적 판단일치를 고도로 보장하는 방법이 되는 셈”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본국법을 법정준거법으로 하면서 상거소지법의 선택을 허용하는 설계에도 비판적인 의견을 보였는데, 상거소의 불확정성으로 인하여 법적 불안정을 낳을 수 있다는 것이다. 장 교수는 “유럽상속규정처럼 상거소지법을 객관적 준거법으로 하고, 국적국법의 선택을 허용하는 쪽이 오히려 불확실성이 적어 보인다”면서 “요컨대, 한국 국제사법 제49조 제2항 하에서는 피상속인이 자신의 상거소지법을 선택한 것으로 인정받을지 확실하지 못한 채 눈을 감아야 하고, 상속개시 후에 이해관계인과 법원, 기타 관청도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야 하지만, 유럽상속규정 하에서는 피상속인이 자신의 당사자자치의 유효성을 확신할 수 있고, 피상속인이 상속준거법 결정에 크게 신경쓰지 않고 사망한 경우에 상속인 등의 이해관계인과 법원, 기타 관청(특히 상거소지국 아닌 타국의)이 상속준거법을 확인하기도 비교적 용이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에 대하여는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면서, 100년 넘게 국적주의를 따르다가 2015년 유럽상속규정 시행으로 원칙적 준거법이 본국법에서 상거소지법주의로 바뀌고, 국적국법은 당사자자치로써 선택할 수 있게 된 독일의 경우를 언급했다. 장 교수는 “독일이 이런 큰 변화를 받아들인 배경에는, 피상속인이 국적주의를 선호하면 생전에 국적국법을 선택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지만, 기대와는 달리 실제로 국적국법을 선택하는 일은 극히 드물다”고 전하면서 “유럽처럼 짜임새 있는 국제사법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경우가 아닌, 한국 혼자 자신의 법률저촉법만 급변시키는 부담은 결코 작지 않을 것이므로, 입법자는 독일의 경험에서 교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 “헤이그신탁협약 가입하려면 학계와 실무계 의견수렴 필요하다”

장 교수는 신탁의 준거법결정을 위하여, 어떤 법률관계에 관

한 국제사법을 적용하거나 유추적용할 것인지의 문제에 대해서도 짚었다. 대표적인 국내외 학설로는 신탁을 재단의 일종으로 다루는 ‘재단설’, 신탁설정행위를 채권법적 법률행위로 분류하고, 이에 의하여 성립하는 법률관계는 물권적 법률관계까지도 그 채권행위의 효력으로 보는 ‘채권행위설’이 대립한다.

관련하여 ‘헤이그신탁협약’이 언급됐는데, 1985년 7월 1일 헤이그에서 체결된 ‘신탁의 준거법과 승인에 관한 협약’은, 신탁의 준거법지정 규칙을 정하고, 협약에 따른 신탁의 준거 외국법이 신탁제도를 인정하면 타 체약국은 이를 법정지법이 아닌 ‘신탁이 아닌 법률관계’로 치환하지 않고, 신탁으로서 수용할 의무를 규정한다.

장 교수는 “재단설에 의하는 채권행위설에 의하는 결과에서 차이가 없다”면서 “하나를 채택한다면 국제법인법의 발달사와 국제사법 내에서의 위상, 국제법인법 내에서 본거지법설이 완전한 형태로 채용되지 못하고 있는 법현실을 감안하여 채권행위설을 취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나아가 “헤이그신탁협약에 가입하는 방안을 제시하려면, 연결점을 명시하지 않고 고려요소들의 나열 내지 예시로 만족하는 입법방식을 받아들이는 데 대하여 학계와 실무계에 걸친 논의와 의견수렴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직접반정만 존중하는 한국, 기회주의적·편의주의적으로 비취질 수 있어”

현행 국제사법은 반정(反定)의 다양한 유형 가운데 직접반정만을 존중하고, 반정의 영원한 순환은 항상 한국법으로 끝맺도록 하고 있다(제9조 제1항). 반정이란, 어떤 섭외적 사안 또는 법률관계에 대하여 법정지 국제사법이 특정 국가의 법을 준거법으로서 지정했으나 그 외국의 국제사법이 법정지법 또는 제3국의 법을 적용할 것을 규정하는 경우, 그 규정에 따라 법정지법 또는 제3국의 법을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장 교수는 “한국 국제사법이 반정 현상을 해결하는 기준을 좀 더 본격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면서 “한국은 유독 내국법 적용 확대에만 열의를 보이는 태도를 취하고 있으며, 이론적으로도 일관성이 높지 않다”고 꼬집었다. 그는 직접반정 외에 전정(轉定)과 간접반정(間接反定)도 허용함이 타당하다면서, 특히 전정은 상속 분야에서 국제적 판단불일치 사태를 피할 수 있는 실익이 있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한국의 독립적 법률저촉규칙이 준거법소속국으로 지정하는 외국이 한국법을 총괄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외국법

을 적용하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이중반정론 채택을 주장했는데, 그 이유로는 △이중반정론까지 인정해야 총괄지정의 취지를 가장 충실히 살릴 수 있고 △한국이 지시하는 외국과의 사이에서 국제적 판단일치를 어김없이 달성할 수 있으며 △ 한국 국제사법의 태도가 반정에 대해 다소 소극적인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유독 직접반정에 대해서만 반정이론을 대환영하는 것은 기회주의적, 편의주의적인 태도라

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들었다.

장 교수는 “입법론으로 제9조 제1항은 전정과 이중반정론도 인정하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는데, 이러한 급격한 변화가 저저된다면 우선 물건, 상속, 유언의 실질과 같이 확실성과 법적 안정성의 필요가 특히 높은 분야에 한정하여 입법화하고, 차차 인정범위를 넓혀 나가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대법원 판례

■ 2020므14763 이혼 및 위자료 (가) 파기환송- 남편의 폭력을 유발한 책임이 있다는 이유로 아내의 이혼청구를 배척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재형)이 3월 25일, 남편의 폭력 행사를 이유로 원고가 이혼청구를 했으나, 원심이 “원고가 자신의 행동을 개선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혼을 요구하는 등 상당 부분 그 폭력을 유발한 책임이 원고에게 있다”며 이혼청구를 배척한 사안에서,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이혼청구를 배척할 사유가 될 수 없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베트남 국민인 원고는 2016년 피고를 만나 2017년 혼인신고를 마쳤고 그 사이에 자녀는 두지 않았다. 피고는 2018년 2월, 부부싸움을 한 뒤 원고로부터 ‘이혼하자’는 문자메시지를 받자 화가나 원고의 뺨을 때려 폭행했다. 5월경 원고가 취업을 하자 잦은 외출이나 귀가시간 문제로 자주 다투었고, 피고는 2019년 3월, 원고가 늦게 귀가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뺨을 때려 폭행했다. 다음날 원고와 피고는 법원에 협의이혼신청서를 제출하고 돌아왔으나, 피고가 이혼하지 말자고 하면서 재차 다투는 과정에서 원고의 머리를 때리고 원고의 배와 머리를 발로 걷어 차 상해를 입혔고, 주방에 있던 부엌칼을 양손에 한 자루씩 들고 “앞으로 같이 잘 살아보든지 안 그러면 오늘 같이 죽자”라고 하

면서 원고를 위협했다. 원고는 위 폭행을 계기로 집을 나와 귀가하지 않고 있다. 피고는 2019년 10월, 같은 해 3월에 있었던 상해와 특수협박을 이유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원심은 피고의 폭력 행사를 인정하면서도, 원고가 피고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거나 원·피고의 혼인관계가 더 이상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원고는 피고로부터 잦은 외출, 귀가시간 또는 외박 장소에 관하여 지속적인 지적을 받으면서도 부부 일방으로서 혼인관계 유지에 책임감을 가지고 자신의 행동을 개선하려고 노력하기 보다는 피고에게 일방적인 이해를 구하거나 이혼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대응함으로써 갈등을 격화시켰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피고는 반복적으로 원고에게 폭력을 행사했고, 원고의 배와 머리를 발로 걷어차고 양손에 각각 부엌칼을 들고 원고의 생명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까지 한 사실을 알 수 있어 그 폭력 행사의 정도도 무겁다”고 판단하면서 “기록에 나타난 당사자의 혼인계속의사 유무, 파탄의 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책임 유무와 경중, 혼인생활의 기간, 자녀의 유무, 당사자의 연령 등 원·피고의 혼인관계에 관한 여러 사정을 두루 고려하면, 원·피고는 더 이상 피고의 폭력 행사 이전의 관계

로 회복될 수 없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하여 이와 달리 본 원심을 파기했다.

■ 2020도15194 상습사기 등 (나) 파기환송- 경범죄처벌법상 통고처분이 이루어진 범행에 대해 공소가 제기된 사건

대법원(주심 이기택 대법관)이 4월 1일, 경범죄처벌법상 통고처분이 이루어진 범칙행위에 대하여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검사가 동일한 범칙행위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경찰서장이 형사소추를 위해 이미 한 통고처분을 임의로 취소할 수도 없으므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했다.

상습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은 2020. 2. 23. 05:30 무렵 저지른 무전취식 범행에 대해 경범죄처벌법상 통고처분을 받은 이후, 같은 날 11:00 무렵 재차 무전취식 범행을 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았다. 조사 과정에서 위 통고처분 내역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이 확인되자 경찰은 “통고처분을 취소하고 상습사기죄로 형사입건코자 한다”라는 내용의 수사보고서를 작성한 다음 범행 전부를 상습사기죄로 의율하여 검찰에 송치했다. 검사는 같은 내용으로 공소를 제기했고, 제1심과 원심은 전부 유죄 판결을 선고했다.

「경범죄 처벌법」은 제3장에서 '경범죄 처벌의 특례'로서 범칙행위에 대한 통고처분(제7조), 범칙금의 납부(제8조, 제8조의2)와 통고처분 불이행자 등의 처리(제9조)를 정하고 있다. 경찰서장으로 부터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은 사람은 통고처분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범칙금을 납부해야 하고, 통고받은 범칙금을 납부한 사람은 그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처벌받지 않는다(제8조 제3항, 제9조 제3항). 대법원은 "위와 같은 규정 내용과 통고처분제도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경범죄 처벌법」상 범칙금제도는 범칙행위에 대하여 형사절차에 앞서 경찰서장의

통고처분에 따라 범칙금을 납부할 경우 이를 납부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기소를 하지 않는 처벌의 특례를 마련해 둔 것으로 법원의 재판절차와는 제도적 취지와 법적 성질에서 차이가 있다"면서 "범칙자가 통고처분을 불이행하였다더라도 기소독점주의의 예외를 인정하여 경찰서장의 즉결심판청구를 통하여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건을 간이하고 신속·적정하게 처리함으로써 소송경제를 도모하되, 즉결심판 선고 전까지 범칙금을 납부하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범칙자에 대하여 형사소추와 형사처벌을 면제받을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경찰서장이 범칙행위에 대하여 통고처분을 한 이상, 범칙자의 위와 같은 절차적 지위를 보장하기 위하여 통고처분에서 정한 범칙금 납부기간까지는 원칙적으로 경찰서장은 즉결심판을 청구할 수 없고, 검사도 동일한 범칙행위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며 "또한 범칙자가 범칙금 납부기간이 지나도록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면 경찰서장이 즉결심판을 청구하여야 하고, 검사는 동일한 범칙행위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경찰서장은 범칙행위에 대한 형사소추를 위하여 이미 한 통고처분을 임의로 취소할 수 없다"고도 덧붙였다.

헌법재판소 판례

■ 2018헌바388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위헌소원- 초·중등법상 교원의 아동학대범죄 가중처벌 사건

헌법재판소가 2021년 3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가운데 제10조 제2항 제20호 중 초·중등교육법 제19조에 따른 교원에 관한 부분이 "책임과 형벌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청구인은 초등학교 담임교사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인 사람인데, 아동학대범죄 혐의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이 계속 중이다. 그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

례법' 제7조가 입법재량의 한계를 일탈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현재는 "성장과정에 있는 아동에 대하여 직접적인 보호의무를 지는 주체로서 아동학대를 방지하고 아동을 보호하여야 할 초·중등학교 교원이, 오히려 자신이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저지르는 행위에 대해서는 높은 비난가능성과 불법성이 인정된다"면서 "이러한 입법자의 판단이 행위자의 책임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하여 현저히 형벌체계상의 균형을 잃고 있거나 그 범죄에 대한 형벌 본래의 목적과 기능을 달성함에 있어 필요한 정도를 넘었다는 등 법정형의 선택에 관한 입법형성권의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나아가 "심판대상조항이 각 죄의 정한 형의 2분의 1을 가중하도록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정형의 범위를 넓히는 것일 뿐 일률적으로 2분의 1을 가

중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상한으로 하여 형을 정할 수 있다는 뜻이므로, 법관은 구체적인 행위의 태양, 그 죄질의 정도와 수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행위자의 책임에 따른 적절한 선고형을 결정하여 형벌을 과하는 것이 가능하다"면서 "심판대상조항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어긋나는 과잉형벌을 규정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2018헌가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제1호 등 위헌제청- 6·25 전몰군경자녀수당 수급권자 1인 한정 및 연장자 우선 사건

헌법재판소가 2021년 3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6·25 전몰군경자녀에게 6·25 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하면서 그 수급권자를 6·25 전몰군경자녀 중 1명에 한정하고, 그 1명도 나이가 많은 자를 우선하도록 정한 법률이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면서, “각 법률조항은 2022.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다.

제청신청인은 6·25 전몰군경 망 A의 차남으로서, 장남인 B와 함께 순직군경유족으로 등록됐다. 심판대상조항에 따라 B는 6·25 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받았으나, 제청신청인은 위 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 이에 제청신청인은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현재는 ‘해당 조항들이 6·25 전몰군경자녀라는 동일한 집단에서 나이가 적은 6·25 전몰군경자녀의 평등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처럼 6·25 전몰군경

자녀 중 1명에게만 이 사건 수당을 지급한다면, 지급받는 자의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생활이 보장되고 경제적으로 유용할 수 있을지 몰라도, 소액의 수당조차 전혀 지급받지 못하는 나머지 자녀의 생활보호는 미흡하게 되는 점 △ 국가의 재정부담 능력 등 때문에 이 사건 수당의 지급 총액이 일정액으로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그 범위 내에서 6·25 전몰군경자녀의 생활정도에 따라 이 사건 수당을 적절히 분할해서 지급한다면 이 사건 수당의 지급취지를 살리면서도 1명에게만 지급됨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합리를 해소할 수 있는 점 등을 들어 “수급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평등권 침해를 인정했다.

이 사건 법률조항이 나이가 많은 자를 우선하도록 한 데 대하여는 “△산업화

에 따른 핵가족화의 영향으로 오늘날 형제간에도 결혼 후에는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 연장자인 자녀가 나이가 적은 다른 자녀를 부양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고 △ 종교적 다양성 확대나 사회문화의 변화에 따라 제사문화 역시 변화하고 있어 연장자가 반드시 제사주재자가 된다고 볼 수도 없으며 △ 형제 관계에 있는 6·25전몰군경자녀 사이에 노동능력 감소 및 부양 능력에 현저히 차이가 있을 정도의 나이 차이를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고 △ 직업이나 보유재산 등에 따라서 연장자의 경제적 사정이 가장 좋은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현재는 법적 공백 상태를 막기 위해 2022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입법자의 개선입법이 있을 때까지 잠정적용을 명했다.

해외법 뉴스

“동성애자·트랜스젠더라는 이유로 해고한 것은 민권법 위반” 선언한 미연방대법원 판례 (Bostock v. Clayton County, 2020. 6. 15.)

<출처: 헌법재판연구원>



미국 ‘민권법(Civil Rights Act of 1964) 제7장은 인종, 피부색, 종교, 성별, 또는 출신민족을 근거로 한 직장에서의 차별을 금지한다. 이 판례는 민권법 제7장 중 “고용주가 개인의 인종, 피부색, 종교, 성별 또는 출신민족 때문에 그 개인을 고용하지 않거나 고용을 거부하거나

해고하는 것, 또는 기타 다른 방식으로 고용상의 급여, 조건, 특전과 관련하여 차별하는 것은 위법한 고용행위이다”라는 규정을 근거로 한 소송이다. 세 가지 사건이 병합됐는데, 각 사건의 고용주는 피고용인(각각 아동복지 변호사, 스카이다이빙 강사, 회사원)을 동성애자 또는

트랜스젠더라는 이유로 해고하여 문제가 됐다. 피고용인들은 자신을 해고한 것이 성별을 근거로 한 불법적인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에 대한 항소법원의 판결은 각기 달랐고, 연방대법원은 동성애자와 트랜스젠더에 대한 민권법 제7장상의

보호범위에 관한 항소법원간의 의견불일치를 해결하기 위해 이 사건의 상고를 허가했다.

연방대법원은 “민권법 제7장은 성적지향이나 젠더 정체성으로 인한 차별도 금지한 것”이자 “단지 동성애자이거나 트랜스젠더라는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민권법 제7장 위반”이라고 선언했다. 이로 인해 이 판례는 시민의 권리에 관한 연방대법원의 랜드마크 판결로 평가되고 있다. 6인(Roberts 대법원장, Gorsuch, Ginsburg, Breyer, Sotomayor, Kagan 대법관)의 법정의견과 2인(Alito, Thomas) 및 1인(Kavanaugh)의 반대의견이 있다.

■ “법관은 법문의 의미 추가할 수 없지만, 법 규정 의미를 약화시켜서도 안되”

법정의견은 먼저 “우리 시대에 1964년 미국 민권법만큼 중요한 연방법률은 몇 되지 않는다”며 사안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고용주는 다른 성별을 가졌다면 문제되지 않았을 특성이나 행위를 이유로 동성애자나 트랜스젠더를 해고했고, 여기서 성별은 고용주의 결정에 있어 중대한 역할을 하였는바 이는 민권법 제7장이 금지하고 있는 바로 그것”이라고 했다. ‘성별(sex)’이라는 규정상 용어의 해석이 쟁점이 된 부분에 대하여는 “이 사건 당사자들은 1964년 당시 성별이라는 용어가 여성과 남성 사이의 ‘생물학적 구분’을 일컫는 것이었다는데 모두 동의했고, 연방대법원은 보통 법률규정을 해석함에 있어 법률제정 당시의 일반적인 대중적 의미에 따라 해석하지만, 동성애자 또는 트랜스젠더 직원을 차별한 고용주는 필연적·고의적으로 성별을 이유로 차별하는 것이 된다”고 봤다. “동성애나 트랜스젠더 지위(transgender status)는 성별과 불가분하게 밀접한 관련이 있어, 성별을 이유로 개인을 차별함 없이 동성애자 또는 트랜스젠더인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게 법정의견의 판단이다. 고용주들이 “1964년 당시 민권법 제7장

이 동성애자나 트랜스젠더 차별에 적용될 것이라고 예상한 사람은 거의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한 데 대하여는 “민권법 제7장의 용어가 어떤 사실관계에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관해 어떠한 애매함도 없는 현상에서는 그러한 입법배경은 아무 상관없다”고 판시하면서, “고용주들의 주장은 ‘연방대법원은 단지 이 문제를 지적하기만 하고 이 주제를 연방의회에 넘겨야 하며, 한동안 그 법률의 명백한 용어를 적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일갈했다. 나아가 “입법 당시 환영받지 못하던 그룹에 대해 보호기능을 하는 법률을 적용하는 것은 종종 예상치 못한 일로 보일 수 있지만, 이런 이유로 법률의 적용을 거부하는 것은 정의의 저울을 강하고 인기있는 사람에게만 유리하게 기울이는 일이 될 것이고, 이는 모든 사람이 법문의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약속을 도외시하는 일”이라면서 “사법적 겸허함에 따라 법관들이 법률규정에 무언가를 추가하는 일이 자제되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법관들이 법률규정을 약화시키는 것 또한 자제되어야 하므로, 법관들은 의도에 대한 추정 또는 예상에 대한 추측에 불과한 것에 기대어 명백한 법규정상의 명령을 간과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 “정의 넓히려는 개정안 통과되지 못한 상황, 법원도 기존 해석 따라야”

대법관 Alito, Thomas 2인의 반대의견은 “법정의견이 사법적 의견의 형태를 취했지만 사실은 ‘입법’을 했다”고 비판했다. 민권법 제7장이 고용차별 금지로 명시한 사유는 ‘인종, 피부색, 종교, 성별, 출신민족’ 5가지일 뿐 ‘성적지향’이나 ‘젠더 정체성’은 그 목록에 들어있지 않아서,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의 개념은 ‘성적지향’이나 ‘젠더 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과는 다른 개념이라고 선을 그었다. 반대의견 2인은 “지난 45년간 연방의회에는 ‘성적지향’을 목록에 넣기 위한 법률안이 상정되어왔고, 최근에는

‘젠더 정체성’도 포함하기 시작했지만 지금까지 어느 법률안도 양원에서 통과된 것은 없으며, 작년에는 성차별에 성적지향과 젠더 정체성이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 정의하도록 민권법 제7장을 개정하는 법률안이 연방하원에서 통과되었지만 아직 상원에 계류중”인 점을 짚으며 “이처럼 민권법 제7장을 개정하려는 시도들이 연방의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법원도 여전히 민권법 제7장을 지금까지 의미해왔던 대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이 사건의 질문은 성적지향이나 젠더 정체성으로 인한 차별이 금지되어야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연방의회가 1964년에 이를 금지하였느냐의 문제”라고 해석하는 한편 “법정의견처럼 ‘성별’로 인한 차별을 성적지향이나 젠더 정체성으로 인한 차별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생물학적 성에 따라 구별된 화장실, 락커룸, 기타 유사한 시설 및 스포츠의 참가 자격에도 큰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며 우려했다.

대법관 Kavanaugh는 반대의견을 통해 “사안의 문제는 민권법 제7장이 성적지향으로 인한 고용차별 금지에까지 확대되어야 하는가”라고 정리하면서 “동성애자인 미국인들이 존엄과 가치에 있어서 열위자나 사회적 낙오자로 대해져서는 안 된다는 바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찬성하지만, 우리는 연방의회 의원이 아니라 법관”이라며 2인의 반대의견과 마찬가지로 관점에서 법정의견을 비판했다.

그는 “법관은 그 결과가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상관없이, 적혀진 그대로의 법률을 해석하고 따르는 것”이라면서 “민권법 제7장은, 적혀진 그대로, 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고용차별은 금지하고 있지 않다”고 봤다. 나아가 “성적지향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새로운 법률의 제정이 바로 가까이 다가온 시점에, 오늘 법정의견은 진행 중인 입법과정을 배제하고 민권법 제7장을 사법적으로 다시 쓴 것”이라며 법정의견에 반대했다.

입법 뉴스

■ 행정기본법 (법률 제17979호, 2021. 3. 23. 제정 및 시행)

- 제정이유

: 행정 법령은 국가 법령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국민 생활과 기업 활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 법령이다. 하지만 그동안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이 되는 기본법이 없어 일선 공무원과 국민들이 복잡한 행정법 체계를 이해하기 어렵고, 개별법마다 유사한 제도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어 하나의 제도 개선을 위하여 수백 개의 법률을 정비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따라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등 학설·판례로 정립된 행정법의 일반원칙을 명문화하고, 행정 법령 개정 시 신법과 구법의 적용 기준, 수리가 필요한 신고의 효력 발생 시점 등 법 집행의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며, 개별법에 산재해 있는 인허가의제 제도 등 유사한 제도의 공통 사항을 체계화함으로써 국민 혼란을 해소하고 행정의 신뢰성·효율성을 제고한다. 나아가 일부 개별법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를 확대하고, 법령이나 판례에 따라 인정되는 권익 보호 수단에 더하여 처분의 재심사 제도를 도입하는 등, 행정 분야에서 국민의 실제적 권리를 강화함으로써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의 제정은 이를 통하여 국민의 권익 보호와 법치주의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이다.

<법제처 제공>

- 본문

제1장 총칙

제1절 목적 및 정의 등

제1조(목적) 이 법은 행정의 원칙과 기본 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의 민주성과 적법성을

을 확보하고 적정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킴으로써 국민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법령 등"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 가. 법령: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1) 법률 및 대통령령·총리령·부령
 - 2)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감사원규칙
 - 3) 1) 또는 2)의 위임을 받아 중앙행정기관(「정부조직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이 정한 훈령·예규 및 고시 등 행정규칙
 - 나. 자치법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규칙
2. "행정청"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 가.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 나. 그 밖에 법령등에 따라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그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사인(私人)
3. "당사자"란 처분의 상대방을 말한다.
4. "처분"이란 행정청이 구체적 사실에 관하여 행하는 법 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5. "제재처분"이란 법령등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말한다. 다만, 제3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정상 강제는 제외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적법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합리적인 행정을 수행할 책무를 진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의 능률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법령등과 제도를 정비·개선할 책무를 진다.

제4조(행정의 적극적 추진) ① 행정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속 공무원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조성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 및 조치를 추진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의 적극적 추진 및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시책의 구체적인 사항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행정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행정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원칙, 기준 및 취지에 부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절 기간의 계산

제6조(행정에 관한 기간의 계산) ① 행정에 관한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을 준용한다.

② 법령등 또는 처분에서 국민의 권익을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권익이 제한되거나 의무가 지속되는 기간의 계산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르는 것이 국민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에는 기간의 첫날을 산입한다.

2.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도 기간은 그 날로 만료한다.

제7조(법령등 시행일의 기간 계산) 법령등(훈령·예규·고시·지침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시행일을 정하거나 계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법령등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포한 날을 시행일로 한다.
2. 법령등을 공포한 날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경우 법령등을 공포한 날을 첫날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법령등을 공포한 날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경우 그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제2장 행정의 법 원칙

제8조(법치행정의 원칙) 행정작용은 법률에 위반되어서는 아니 되며,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와 그 밖에 국민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하여야 한다.

제9조(평등의 원칙) 행정청은 합리적 이유 없이 국민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비례의 원칙) 행정작용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1. 행정목적을 달성하는 데 유효하고 적절할 것
2. 행정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칠 것
3. 행정작용으로 인한 국민의 이익 침해가 그 행정작용이 의도하는 공익보다 크지 아니할 것

제11조(성실의무 및 권한남용금지의 원칙) ① 행정청은 법령등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행정청은 행정권한을 남용하거나 그 권한의 범위를 넘어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신뢰보호의 원칙) ① 행정청은 공

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에 대한 국민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신뢰를 보호하여야 한다.

② 행정청은 권한 행사의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권한을 행사하지 아니하여 국민이 그 권한이 행사되지 아니할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3조(부당결부금지의 원칙) 행정청은 행정작용을 할 때 상대방에게 해당 행정작용과 실질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해서는 아니 된다.

제3장 행정작용

제1절 처분

제14조(법 적용의 기준) ① 새로운 법령등은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법령등의 효력 발생 전에 완성되거나 종결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②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처분은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처분 당시의 법령등을 적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분 당시의 법령등에 따른다.

③ 법령등을 위반한 행위의 성립과 이에 대한 제재처분은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령등을 위반한 행위 당시의 법령등에 따른다. 다만, 법령등을 위반한 행위 후 법령등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법령등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제재처분 기준이 가벼워진 경우로서 해당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변경된 법령등을 적용한다.

제15조(처분의 효력) 처분은 권한이 있는 기관이 취소 또는 철회하거나 기간의 경과 등으로 소멸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것으로 통용된다. 다만, 무효인 처분은 처음

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제16조(결격사유) ① 자격이나 신분 등을 취득 또는 부여할 수 없거나 인가, 허가, 지정, 승인, 영업등록, 신고 수리 등(이하 "인허가"라 한다)을 필요로 하는 영업 또는 사업 등을 할 수 없는 사유(이하 이 조에서 "결격사유"라 한다)는 법률로 정한다.

② 결격사유를 규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규정의 필요성이 분명할 것
2. 필요한 항목만 최소한으로 규정할 것
3. 대상이 되는 자격, 신분, 영업 또는 사업 등과 실질적인 관련이 있을 것
4. 유사한 다른 제도와 균형을 이룰 것

제17조(부관) ① 행정청은 처분에 재량이 있는 경우에는 부관(조건, 기한, 부담, 철회권의 유보 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붙일 수 있다.

② 행정청은 처분에 재량이 없는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부관을 붙일 수 있다.

③ 행정청은 부관을 붙일 수 있는 처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한 후에도 부관을 새로 붙이거나 종전의 부관을 변경할 수 있다.

1.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
2.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3. 사정이 변경되어 부관을 새로 붙이거나 종전의 부관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해당 처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부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해당 처분의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할 것
2. 해당 처분과 실질적인 관련이 있을 것
3. 해당 처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일 것

제18조(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취소)

① 행정청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전부나 일부를 소급하여 취소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의 신뢰를 보호할 가치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장래

를 향하여 취소할 수 있다.

② 행정청은 제1항에 따라 당사자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처분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취소로 달성되는 공익과 비교·형량(衡量)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처분을 받은 경우
- 2. 당사자가 처분의 위법성을 알고 있었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제19조(적법한 처분의 철회) ① 행정청은 적법한 처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래를 향하여 철회할 수 있다.

- 1. 법률에서 정한 철회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 2. 법령등의 변경이나 사정변경으로 처분을 더 이상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경우
 - 3. 중대한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② 행정청은 제1항에 따라 처분을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철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철회로 달성되는 공익과 비교·형량하여야 한다.

제20조(자동적 처분) 행정청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시스템을 포함한다)으로 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처분에 재량이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재량행사의 기준) 행정청은 재량이 있는 처분을 할 때에는 관련 이익을 정당하게 형량하여야 하며, 그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서는 아니 된다.

제22조(제재처분의 기준) [시행일 : 2021. 9. 24.]

① 제재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는 제재처분의 주체, 사유, 유형 및 상한을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재처분의 유형 및 상한을 정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의 특수성 및 유사한 위반행위와

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행정청은 재량이 있는 제재처분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1. 위반행위의 동기, 목적 및 방법
- 2. 위반행위의 결과
- 3. 위반행위의 횟수
-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23조(제재처분의 제척기간) [시행일 : 2023. 3. 24.]

① 행정청은 법령등의 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해당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재처분(인허가의 정지·취소·철회, 등록 말소, 영업소 폐쇄와 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할 수 없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
- 2. 당사자가 인허가나 신고의 위법성을 알고 있었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 3. 정당한 사유 없이 행정청의 조사·출입·검사를 기피·방해·거부하여 제척기간이 지난 경우
- 4. 제재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국민의 안전·생명 또는 환경을 심각하게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행정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심판의 재결이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제재처분이 취소·철회된 경우에는 재결이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합의제행정기관은 2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그 취지에 따른 새로운 제재처분을 할 수 있다.

④ 다른 법률에서 제1항 및 제3항의 기간보다 짧거나 긴 기간을 규정하고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절 인허가의제

제24조(인허가의제의 기준) [시행일 :

2023. 3. 24.]

① 이 절에서 “인허가의제”란 하나의 인허가(이하 “주된 인허가”라 한다)를 받으면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와 관련된 여러 인허가(이하 “관련 인허가”라 한다)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것을 말한다.

② 인허가의제를 받으려면 주된 인허가를 신청할 때 관련 인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함께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된 인허가 행정청이 별도로 정하는 기한까지 제출할 수 있다.

③ 주된 인허가 행정청은 주된 인허가를 하기 전에 관련 인허가에 관하여 미리 관련 인허가 행정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관련 인허가 행정청은 제3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제5항 단서에 따른 절차에 걸리는 기간은 제외한다)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단에서 정한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는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연장한 기간을 말한다) 내에 협의 여부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된 것으로 본다.

⑤ 제3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관련 인허가 행정청은 해당 법령을 위반하여 협의에 응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관련 인허가에 필요한 심의, 의견 청취 등 절차에 관하여는 법률에 인허가의제 시에도 해당 절차를 거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이를 거친다.

제25조(인허가의제의 효과) [시행일 : 2023. 3. 24.]

① 제24조제3항·제4항에 따라 협의가 된 사항에 대해서는 주된 인허가를 받았을 때 관련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인허가의제의 효과는 주된 인허가의 해당 법률에 규정된 관련 인허가에 한정된다.

제26조(인허가의제의 사후관리 등) [시행일 : 2023. 3. 24.]

① 인허가의제의 경우 관련 인허가 행정청은 관련 인허가를 직접 한 것으로 보아

관계 법령에 따른 관리·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주된 인허가가 있는 후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24조·제25조 및 이 조 제1항을 준용한다.

③ 이 절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허가의 제의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절 공법상 계약

제27조(공법상 계약의 체결) ① 행정청은 법령등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계약(이하 "공법상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의 목적 및 내용을 명확하게 적은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행정청은 공법상 계약의 상대방을 선정하고 계약 내용을 정할 때 공법상 계약의 공공성과 제3자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야 한다.

제4절 과징금

제28조(과징금의 기준) ① 행정청은 법령등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과징금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는 과징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

- 1. 부과·징수 주체
- 2. 부과 사유
- 3. 상한액
- 4. 가산금을 징수하려는 경우 그 사항
- 5. 과징금 또는 가산금 체납 시 강제징수를 하려는 경우 그 사항

제29조(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시행일 : 2021. 9. 24.]

과징금은 한꺼번에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행정청은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과징금 전액을 한꺼번에 내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납부기한

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 1. 채해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 2. 사업 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 3. 과징금을 한꺼번에 내면 자금 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제5절 행정상 강제

제30조(행정상 강제) [시행일 : 2023. 3. 24.]

① 행정청은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 1. 행정대집행: 의무자가 행정상 의무(법령등에서 직접 부과하거나 행정청이 법령등에 따라 부과한 의무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로서 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있는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률로 정하는 다른 수단으로는 그 이행을 확보하기 곤란하고 그 불이행을 방지하면 공익을 크게 해칠 것으로 인정될 때에 행정청이 의무자가 하여야 할 행위를 스스로 하거나 제3자에게 하게 하고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것
- 2. 이행강제금의 부과: 의무자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청이 적절한 이행기간을 부여하고, 그 기간까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금전급부의무를 부과하는 것
- 3. 직접강제: 의무자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청이 의무자의 신체나 재산에 실력을 행사하여 그 행정상 의무의 이행이 있었던 것과 같은 상태를 실현하는 것
- 4. 강제징수: 의무자가 행정상 의무 중 금전급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청이 의무자의 재산에 실력을 행사하여 그 행정상 의무가 실현된 것과 같은 상태를 실현하는 것

- 5. 즉시강제: 현재의 급박한 행정상의 장애를 제거하기 위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행정청이 곧바로 국민의 신체 또는 재산에 실력을 행사하여 행정목적 달성을 하는 것
 - 가. 행정청이 미리 행정상 의무 이행을 명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 나. 그 성질상 행정상 의무의 이행을 명하는 것만으로는 행정목적 달성이 곤란한 경우

② 행정상 강제 조치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③ 형사(刑事), 행형(行刑) 및 보안처분 관계 법령에 따라 행하는 사항이나 외국인의 출입국·난민인정·귀화·국적회복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이 절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1조(이행강제금의 부과) [시행일 : 2023. 3. 24.]

①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근거가 되는 법률에는 이행강제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 또는 제5호를 규정할 경우 입법목적이나 입법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1. 부과·징수 주체
- 2. 부과 요건
- 3. 부과 금액
- 4. 부과 금액 산정기준
- 5. 연간 부과 횟수나 횡수의 상한

② 행정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이행강제금의 부과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 1. 의무 불이행의 동기, 목적 및 결과
- 2. 의무 불이행의 정도 및 상습성
- 3. 그 밖에 행정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유

③ 행정청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미리 의무자에게 적절한 이행기간을 정하

여 그 기한까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뜻을 문서로 계고(戒告)하여야 한다.

④ 행정청은 의무자가 제3항에 따른 계고에서 정한 기한까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강제금의 부과 금액·사유·시기를 문서로 명확하게 적어 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행정청은 의무자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반복하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⑥ 행정청은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행강제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강제징수의 예 또는 「지방행정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제32조(직접강제) [시행일 : 2023. 3. 24.]

① 직접강제는 행정대집행이나 이행강제금 부과에 따른 행정상 의무 이행을 확보할 수 없거나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에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직접강제를 실시하기 위하여 현장에 파견되는 집행책임자는 그가 집행책임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보여 주어야 한다.

③ 직접강제의 계고 및 통지에 관하여는 제31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제33조(즉시강제) [시행일 : 2023. 3. 24.]

① 즉시강제는 다른 수단으로는 행정목적 달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만 허용되며, 이 경우에도 최소한으로만 실시하여야 한다.

② 즉시강제를 실시하기 위하여 현장에 파견되는 집행책임자는 그가 집행책임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보여 주어야 하며, 즉시강제의 이유와 내용을 고지하여야 한다.

제6절 그 밖의 행정작용

제34조(수리 여부에 따른 신고의 효력) [시행일 : 2023. 3. 24.]

법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청에 일정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하는 신고로서

법률에 신고의 수리가 필요하다고 명시되어 있는 경우(행정기관의 내부 업무 처리 절차로서 수리를 규정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행정청이 수리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

제35조(수수료 및 사용료) ① 행정청은 특정인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제공받는 자에게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② 행정청은 공공시설 및 재산 등의 이용 또는 사용에 대하여 사전에 공개된 금액이나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른다.

제7절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재심사

제36조(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시행일 : 2023. 3. 24.]

① 행정청의 처분(「행정심판법」 제3조에 따라 같은 법에 따른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행정청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14일 이내에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그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④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은 후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는 자는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제2항에 따른 통지기간 내에 결과를 통지받지 못한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통지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을 말한다)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⑤ 다른 법률에서 이의신청과 이에 준하는 절차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 법률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이 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 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따른 징계 등 처분에 관한 사항
2.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에 따른 진정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
3. 「노동위원회법」 제2조의2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하는 사항
4. 형사, 행형 및 보안처분 관계 법령에 따라 행하는 사항
5. 외국인의 출입국·난민인정·귀화·국적회복에 관한 사항
6.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제37조(처분의 재심사) [시행일 : 2023. 3. 24.]

① 당사자는 처분(제재처분 및 행정상 강제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행정심판, 행정소송 및 그 밖의 쟁송을 통하여 다툴 수 없게 된 경우(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처분을 한 행정청에 처분을 취소·철회하거나 변경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1. 처분의 근거가 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가 추후에 당사자에게 유리하게 바뀐 경우
2. 당사자에게 유리한 결정을 가져다주었을 새로운 증거가 있는 경우
3. 「민사소송법」 제451조에 따른 재심사유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은 해당 처분의 절차, 행정심판, 행정소송 및 그 밖의 쟁송에서 당사자가 중대한 과실 없이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주장하지 못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은 당사자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안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다.

④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행정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합의제행정기관은 180일) 이내에 처분의 재심사 결과(재심사 여부와 처분의 유지·취소·철회·변경 등에 대한 결정을 포함한다)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90일(합의제행정기관은 180일) 이내에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90일(합의제행정기관은 18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처분의 재심사 결과 중 처분을 유지하는 결과에 대해서는 행정심판, 행정소송 및 그 밖의 쟁송수단을 통하여 불복할 수 없다.

⑥ 행정청의 제18조에 따른 취소와 제19조에 따른 철회는 처분의 재심사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처분의 재심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 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1.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따른 징계 등 처분에 관한 사항
- 2. 「노동위원회법」 제2조의2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하는 사항
- 3. 형사, 행형 및 보안처분 관계 법령에 따라 행하는 사항
- 4. 외국인의 출입국·난민인정·귀화·국적회복에 관한 사항
- 5.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 6. 개별 법률에서 그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 경우

제4장 행정의 입법활동 등

제38조(행정의 입법활동) [시행일 : 2021. 9. 24.]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법령등을 제정

개정·폐지하고자 하거나 그와 관련된 활동(법률안의 국회 제출과 조례안의 지방의회 제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장에서 "행정의 입법활동"이라 한다)을 할 때에는 헌법과 상위 법령을 위반해서는 아니되며, 헌법과 법령등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행정의 입법활동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 1. 일반 국민 및 이해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 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책임 있게 추진되어야 한다.
- 2. 법령등의 내용과 규정은 다른 법령등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고, 법령등 상호 간에 중복되거나 상충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 3. 법령등은 일반 국민이 그 내용을 쉽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쉽게 만들어져야 한다.

③ 정부는 매년 해당 연도에 추진할 법령안 입법계획(이하 "정부입법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행정의 입법활동의 절차 및 정부입법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부의 법제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행정법제의 개선) [시행일 : 2021. 9. 24.]

① 정부는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위헌으로 결정되어 법령이 헌법에 위반되거나 법률에 위반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을 개선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행정 분야의 법제도 개선 및 일관된 법 적용 기준 마련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기관 협의 및 관계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개선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현행 법령에 관한 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제40조(법령해석) [시행일 : 2021. 9. 24.]

① 누구든지 법령등의 내용에 의문이 있으면 법령을 소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법령소관기관"이라 한다)과 자치법

규를 소관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법령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법령소관기관과 자치법규를 소관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각각 소관 법령등을 헌법과 해당 법령등의 취지에 부합되게 해석·집행할 책임을 진다.

③ 법령소관기관이나 법령소관기관의 해석에 이의가 있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령해석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기관에 법령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

④ 법령해석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법률 제17979호, 2021. 3. 2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 제29조, 제38조부터 제40조까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 제36조 및 제37조는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재처분에 관한 법령등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3항 단서의 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 제재처분에 관한 법령등이 변경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제재처분의 제척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23조는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제4조 (공법상 계약에 관한 적용례) 제27조는 이 법 시행 이후 공법상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 (행정상 강제 조치에 관한 적용례) ① 제31조는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32조 및 제33조는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직접강제나 즉시강제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36조는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에 하는 처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처분의 재심사에 관한 적용례) 제37조는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에 하는 처분부터 적용한다.

■ 한국법학원 회비 납부 안내

연회비	연회비 납부방법	유료회원 서비스	납부계좌
1. 교수, 판사, 변호사, 검사, 법무관 등 개인 회원 : 3만원 2. 법대도서관, 법률관련 기관 등 단체 회원 : 5만원	1. 홈페이지 가입 2. 연회비 납부 후 한국법학원으로 전화 또는 이메일 3. CMS 신청 가능: 사무국으로 문의 (02-753-6002/ ksl@lawsociety.or.kr)	1. <저스티스> 연6회 제공: pdf 다운 가능 2. 심포지엄, 포럼 등 행사 참석 가능 (자료집 제공)	(우리은행) 052-500872-01-015 (국민은행) 815637-04-000084 (신한은행) 302-05-032394

☺ 한국법학원이 만드는 모든 기사·콘텐츠는 홈페이지 www.lawsociety.or.kr '뉴스레터' 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한국법학원 학술연구부 동정 ※

이성범(독일 브레멘대 법학박사), 김나래(숙명여대 법학박사, 前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전문위원)
민법팀 연구위원 채용